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
(농축산위생품질팀)

1. 개정이유

법 개정(‘22.6)에 따른 하위법제때마련으로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농산물 이력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 및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농산물 이력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47조의 2 신설)

- 1) 이력정보의 공개는 공개에 동의한 자로 하고, 공개 범위(목록)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으로 정하는 등 공개 대상과 목록을 구체화
- 2) 인터넷 등 농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방법(수단) 구체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7조의2(이력정보의 공개 등) ① 법 제24조제9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력정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(제47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 또는 갱신신청 시 등록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)으로 한다.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이력정보를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,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7조의2(이력정보의 공개 등)</u> ① <u>법 제24조제9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력정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(제47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 또는 갱신신청 시 등록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)으로 한다.</u> 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이력정보를 농산물우수관리 시스템,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	
연 락 처	(044) 201 - 2276